

정책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관련 항목:	ACF, ACF-RA, COB-RA, GME-EA, IOH-RA, IJA-RA, IRB-EA, IRB-RA, JGB-EA, JHC-RA, JHF, JHF-RA, JOA-RA
책임 부서: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Special Education and Student Services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6-113, Family Law Article, §§5-560, 5-561, 5-701, 5-702, 5-705.2, 5-704, 5-705, 5-708, and Human Services Article, §1-202;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07.02.07.04-.05, 13A.12.05.02, and 13A.08.01.03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A. 목적¹

이 정책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에 대한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의 헌신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과 약한 성인(vulnerable adult)은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교육위원회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아동 및 약한 성인 학대와 방치의 인지, 보고, 예방을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아우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가 학부모와 후견인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회에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문제에 대한 각성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발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교직원 및 교육구 고용인이 업무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이해하고 실행 및 적용하며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를 인지, 보고, 예방하도록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확실히 따르도록 합니다.

¹ JHC-RA 규정,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는 이 정책에 사용되는 다음에 대한 항목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학대, 방치, 학교의 아동 학대 연락 담당자, 아동, 약한 성인, MCPS 고용자, MCPS 교직원, MCPS 계약직원, MCPS 자원봉사자, MCPS 소유지.

2. Montgomery 카운티 주검사실,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MCPD), Child Protective Services(CPS)로 알려진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MCDHHS) 아동복지 서비스와 기타 외부 기관과 같은 Montgomery 카운티 협력기관이 의심되는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조사에 온전히 협조합니다.
3. 카운티 협력기관과 상의하여 학대 및/또는 방치의 피해자인 아동과 약한 성인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4. MCPS 소유지에서 직접, 감독 없고 규제 없이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외부 계약직원을 포함한 새로 고용되는 직원과 고용 중인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과 인사관리 과정을 높입니다.
5.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인지, 보고, 예방에 관한 최근 적용방법에 따르며, 국내와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MCPS 고용인을 위한 전문성을 개발합니다.
6. 학대와 방치 예방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탄탄하고 나이에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모든 학년에서 제공합니다.
7. 학부모, 외부 계약자, 자원봉사자, 폭넓은 지역사회원들에게 아동 및 약한 성인 학대와 방치 인지, 보고, 예방에 관한 각성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B. 입장 표명

1.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보고와 대응

- a) 모든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가 의심될 경우, 바로 카운티 협력기관들과 합동으로 개발한 보고절차에 따라, 아동보호 서비스(CPS)에 개별적으로 직접보고해야 합니다. 성적 공격에 관련된 의심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MCPS와 카운티 협력기관은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 특수 피해 수사국(Special Victims Investigations Division of the MCPD)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추가 수칙을 개발해야 합니다.²
- b) 의심스러운 학대나 방치에 대한 신고 여부에 관하여 망설여진다면, CPS에 협의를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² 약한 성인의 학대 또는 방치의 경우는 MCDHHS의 Aging and Disabilities Services Information and Assistance Unit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c) CPS에 보고하기 전에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 d)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CPS, MCPD 및 다른 외부 기관이 의심되는 학대, 방치 조사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 e)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에 의한 아동 학대 및/또는 아동 방치에 대한 모든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1) 적절한 MCPS 사무실과 카운티 협력기관은 의심되는 가해자가 의심되는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교육위원회 정책, MCPS 규정, 계약, 다른 지침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전체를 일관되게 적용한 내부 조사가 MCPS에 의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외부 기관에서의 모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조사가 계류되며 MCPS는 증인, 의심되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조사기관과의 사전 동의 또는 권장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MCPS는 모든 내부 조사를 조사하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실행해야 하며 방해 또는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밀유지, 면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 a) Maryland 법에 따르면 좋은 의도로 학대와 방치를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사법절차 결과에 관여한 사람 또는 참여하는 사람은, 아동 학대나 방치 신고를 하게 되거나 조사, 사법절차 결과에 연관되지 않는 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처분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 b) MCPS 고용인,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학대 또는 방치 혐의 보고를 고의로 못하게 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 c)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학대 또는 방치에 좋은 의도로 보고 및 인도하거나 조사에 참여할 경우, MCPS는 협박, 학대,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 d) 학생이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 또는 증인일 경우 및 학생이 학대 또는 방치를 보고했을 경우 또한, 학대 또는 방치 조사에 참여할 경우, MCPS는 협박, 학대, 보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 e) 의심되는 학대나 방치에 관한 기록이나 보고서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은 Maryland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로 모든 MCPS 교직원, 자원봉사자, 계약 직원은 법으로 보고처를 요구받지 않는 한, 보고자 신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3. 아동학대와 방치 보고를 고의로 안 할 경우와 보고를 방해할 경우에 따르는 결과

MCPS에서 전문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로 아동 학대, 아동 방치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보고를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해고 또는 정지, 계약의 해지 및 봉사 기회의 발탁, 증명서나 자격증의 박탈을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Maryland State Board of Education (MSDE) 및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증과 수료증도 박탈,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방어에 대한 결과

MCPS가 MCPS 직원, 계약직원, 자원봉사자가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에 연루될 경우, 연루된 자는 해고 또는 정지, 계약의 해지 및 봉사 기회의 발탁, 증명서나 자격증의 박탈을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MSDE 또는 교육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나 자격증은 Maryland 법에 따라 박탈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c. 전략의 시행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이 정책 시행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CPS, MCPD, 주 검사실을 포함한 카운티 협력기관과의 이해각서 체결에 따라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보고 절차와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혐의 조사에 대한 절차를 책정하고 관리합니다.
2. 하나 이상의 MCPS 시스템 내 아동 학대 연락처를 정하고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피해 학생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조직하고 과정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는 학교를 기점으로 하는 연락 담당자와 적절한 사무실 및 부서의 담당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3. MCPS 소유지에서 직접, 감독 없고 규제 없이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외부 계약직원을 포함한 새로 고용되는 직원과 고용 중인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과 과정을 높입니다.

4. MCPS 소유지에서 직접, 감독 없고 규제 없이 학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외부 계약직원을 포함한 새로 고용되는 직원과 고용 중인 직원 감사 과정을 개발합니다.
5. 책임 있는 행동과 성인과 학생 간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함께 MCPS 교직원과 MCPS 소유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MCPS 행동규범과 다른 행동지침을 개발합니다.
6. 아동학대, 개인 신체의 안전, 학생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건강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탄탄하고 연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7. 학부모/후견인과 지역사회 교육과 함께 각성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D. 바라는 결과

1. MCPS 커뮤니티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과 약한 성인들에 대한 아동 학대와 방치를 알고, 신고하고 예방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안전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지원하고 돕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MCPS와 메릴랜드 카운티 협력 기관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보고되는 의심되는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를 조사하고 아동 학대와 방치의 피해자인 학생을 돕습니다.

E.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 이 정책의 적용을 위한 주요 과정 개발은 정보로 분류되어 교육위원회에 보내집니다.
2.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연차보고서와 추가로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a) MCPS가 법기관 또는 보호서비스 기관에 보고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및/또는 아동 방치의 케이스.
 - b) 다음에 대한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에 의한 아동 학대 및/또는 아동 방치 통합 보고서:
 - i. MCPS 교직원, 계약직원, 자원봉사자의 의심되는 학대 및/또는 방치와 조치에 따라 정리된 최종 요약 보고의 수.

- ii. MCPS 교직원, 계약직원, 자원봉사자의 아동학대 및/또는 방치에 대한 체포 및 구형에 대한 공개된 설명의 요약과 각 과정 또는 절차의 정리된 요약.
 - iii. 교육구 교육감이 Maryland 주 교육감에게 보낸 이 정책에 따라 행동에 따른 결과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의 수.
- c) 위의 섹션 C에 따른 전략의 적용.
 - d)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MCPS와 카운티 협력기관 간의 협동노력에 대한 정보.
3. 이 정책은 매해 재검토합니다.

정책 시간적 배경: Resolution No 137-80, February 12, 1980, amended by Resolution No 853-83, October 11, 1983, amended by Resolution 333-86, June 12, 1986, and Resolution No 458-86, August 12, 1986, accepted by Resolution No 518-86, September 22, 1986; reviewed October 10, 2007; amended by Resolution No 359-15, June 29, 2015.